

의안번호	2201146
의 퇴 인	문진석 의원
회 답 일	2024. 7. 15.
추계번호	24F14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1조제6항, 제7항, 제8항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감면내용: 취득세 25%, 재산세 50%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감면내용: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3년간 재산세 25%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1조제6항, 제7항, 제8항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급될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될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22년 기준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 통계: 2022년 기준

(단위: 호)

	LH	지자체 지방공사
서울	2,505	4,317
부산	1,214	244
대구	593	122
인천	2,274	699
광주	379	0
대전	526	45
울산	108	0
세종	83	0
경기	5,386	607
강원	612	0
충북	327	0
충남	299	0
전북	633	13
전남	217	1
경북	628	150
경남	700	0
제주	137	102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2024년 6월 현재 공급 실적은 없으며, 향후 2025년까지 일부 지역(경기, 제주)에서 약 340호를 공급할 계획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의4호)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고은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은비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